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
------------	---

2018년 12월 17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7월 2일, 서윤기 의원 등 13명
2. 회부일자 : 2018년 7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18년 12월 17일 상정·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윤기 의원)

1. 제안이유

- 석면은 잠복기가 길고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 석면사용이 많았던 1990년대 이전에 건축된 대부분의 학교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교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학교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학교석면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 라. 석면 해체·제거 공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정보관리, 홍보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사.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서윤기 의원 등 13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호로 발의되어 2018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의 석면건축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그리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레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석면은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섬유모양의 화성암으로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등 건축물의 내외장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면이 폐에 흡입될 경우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지면서, 정부는 2007년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2009년부터 석면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 이후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전체 1,954개 학교에 대해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사용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¹⁾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교 중 석면 건축 자재를 사용한 학교는 전체의 80%인 1,566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10개교는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1) ‘2013년도 학교 석면 조사결과 보고’

가. 기간 : 2013.8~2014.2.28.

나. 조사학교 대상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등	계
전체 학교수	869	597	382	318	29	14	2,209(100%)
제외 대상교	178	35	22	20	0	0	255(11.5%)
조사 학교수	691	562	360	298	29	14	1,954(88.5%)

- 제외대상: 2009년 이후 착공신고 학교, 친환경건축물, 병설유치원(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조사), 휴·폐원 유치원

다. 조사방법

- 교육청 조사(1,851교) : 교육청 일괄 석면조사기관 의뢰(2012년 서울시 ‘학교석면 컨설팅 사업’으로 조사한 초등학교 100개교 포함)

- 학교 자체 조사(103교) : 학교 개별적으로 석면조사기관 의뢰(국립 및 재정결함 미지원 대상학교, 자체조사 완료교)

[표-1] 2013년 서울시내 학교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실태 조사 결과²⁾

조사 학교수 (교)	학교수(교)				계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무석면		
		비율		비율	
1,954	1,566	80%	388	20%	1,954

○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총 410개 교의 석면 제거를 완료하였고, 2027년까지 매년 약 4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05개교의 석면을 모두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표-2] 석면 제거 현황

(2018. 6. 30. 나이스 보고자료 기준, 단위: 교, 실)

구분	전체 학교수	무석면 학교수*	석면제거 후 무석면		석면보유	
			학교수	실수	학교수	실수
유	868	400	149	491	319	2,030
초	595	80	116	5,829	399	17,426
중	382	55	65	3,898	262	10,303
고	317	44	64	4,965	209	10,632
기타	43	20	7	1,081	16	506
계	2,205	599	401	16,264	1,205	40,897

○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내 석면의 완전한 제거는 2027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내 석면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³⁾ 학교 석면 제거 및 관리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2013년도 학교 석면 조사결과 보고',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7848,(2014.4.30.)

3) '방학 중 석면제거, 개학 후 대청소한 초등학교서 석면 재검출' (연합뉴스, 2018,5,23), '석면 검출, 서울 인현초, 사상 첫 개학 연기사태' (서울신문, 2018,2,24), '석면 잔재물 검출된 서울 덕수초 임시방학 결정' (이데일리, 2018,3,28),

- 따라서 동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석면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학교내 석면 자재의 실태조사와 함께 석면의 해체·제거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한 석면 관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적용범위의 총칙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따른 일정 및 조치 사항,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역할, 석면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교육, 연구용역 및 위탁 관련 사항 등의 본칙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석면안전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적용범위에 관한 의견(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서울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4)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4)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서울시교육청이 지도·감독하는 학교로 규정한 것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안 제4조에서 인용한 「유아교육법」 제7조는 유치원의 설립주체에 대한 구분을 규정한 것인바, 안 제4조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의 정의에 대한 규정⁵⁾을 인용하는 것이 보다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⁶⁾.

3)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안 제5조)

○ 안 제5조는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등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5조제1항), 시·도지사는 매년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6조제1항).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를 총괄로 매년 ‘석면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의 석면 건축물의 경우에도 동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서울시 추진계획은 서울시내 학교 등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석면관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학교 내 석면건축물에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5)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6) 「학교석면관리 매뉴얼(4차개정)」, 교육부, p.3.

- 적용범위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초·중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

대한 효과적 관리 측면과 관할청의 책무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안 제5조와 같이 교육청이 시청과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도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석면관리와 관련해서 시행계획이 시청과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업무 추진과정에서 양 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안 제9조)

- 안 제9조는 학교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⁷⁾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석면자재를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법 및 교육부 지침⁸⁾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위해성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학교석면관리 매뉴얼(4차개정)」, 교육부, p.11.
가. 학교장

- 1)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석면자재 유지·관리 및 학교 내 적절한 석면관리 대책 마련
- 2) 석면 비산우려를 고려한 개·보수 등 적극적 안전대비책 강구
- 3) 학교 구성원 대상 석면안전관리 교육 실시
- 4)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신고방법 : NEIS)

- 그리고 학교의 석면이력을 관리하며,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시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공사의 감시·감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9).

○ 또한 석면의 해체·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¹⁰⁾와 교육부 지침¹¹⁾에 따라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 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이하 생략).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학교석면관리 매뉴얼(4차개정)」, 교육부, p.12.

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1) 6개월마다 학교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석면비산 가능성 등의 조사(위해성 평가) 및 적절한 조치
- 2)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시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 제공 및 공사 감시·감독
-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 석면이력 관리
- 4) 학교 홈페이지, 교내 방송, 가정통신문등을 통한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등) 대상 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 등급 등 공지·홍보
- 5) 최초 지정 및 변경(최초 지정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시 1년 이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6시간)
⇒ 교육 이수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보수교육(4시간) 이수 권고

10)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11) 「학교석면관리 매뉴얼(4차개정)」, 교육부, p.44.

다. 손상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 1) 교체 대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50㎡(예: 텍스 1장 면적을 0.18㎡로 가정할 경우 약 278장)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철거 및 교체 작업 실시

- 따라서 안 제9조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는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는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안 제9조제5항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공사 시작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4조¹²⁾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공사시행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8의2¹³⁾에 따른 교육을 정기·비정기적으로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¹⁴⁾
- 그러나 공사작업자에 대해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시켜야 하는 석면건축

1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해체 또는 제거작업 등과 관련된 교육

13) 「석면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석면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38.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교육부, p.12.

2.3.5 설비 해체·제거

- 설비 해체·제거작업 전 해당 근로자는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하는 석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6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을 뿐, 별도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이미 공사시행 사업주로부터 법률에 따라 정기·비정기적으로 석면 해체 및 제거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 공사 근로자에게 석면 비전문가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중복하여 교육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되며,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교육시설안전과-6988).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수정안의 요지 :

- 적용범위 중 유치원의 상위법령 규정을 수정함.
- 석면조사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정기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함.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함.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석면안전관리의 범위를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수정함.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공사작업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삭제하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공사의 진행시 공사작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 신속한 석면해제·제거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
----------	---------

제안연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상위법률의 인용규정을 명확히 하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중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함.
- 또한 학교내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역할을 확대하고, 학교내 석면의 신속한 해체·제거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가.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 중 유치원의 상위법령 규정을 변경함(안 제4조제1호).
- 나.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1항).
- 다.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함(안 제9조제3항).
- 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내용을 기록·보존하고 석면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공사시 관련 자료를 공사작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마. 석면해제·제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6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호의 “「유아교육법」 제7조” 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석면조사기관으로” 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으로” 로 한다.

안 제9조제3항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를 “석면해체·제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및 석면함유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안 제9조에 다음과 같이 제6항을 신설한다.

⑥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4조(적용범위) (생략)</p> <p>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p> <p>2. (생략)</p>	<p>제4조(적용범위) (원안과 같음)</p> <p>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p> <p>2. (원안과 같음)</p>
<p>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건축물 및 물질에 대해 <u>석면조사기관으로</u>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건축물 및 물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u>석면조사기관으로</u>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⑤ (원안과 같음)</p>
<p>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p> <p>① ~ ② (생략)</p> <p>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u>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u>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u>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u>하여야 한다.</p>	<p>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p> <p>① ~ ② (원안과 같음)</p> <p>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u>석면해체·제거</u>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u>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u>하여야</p>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석면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신 설>

한다.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및 석면함유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석면지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 건축물 및 물질의 안전한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
2. 학교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3.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석면 해체·제거 공사 일정) ① 학교의 장은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일정 등을 담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사계획을 검토한 후 공사업체의 공사 일정 및 각 학교의 석면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별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공사 시행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공사에 따른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건축물 및 물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공사를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대체학습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공사 과정을 공개하고 공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및 석면함유물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작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석면 정보관리 및 교육) ①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과 관련한 학교별 통계 등의 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에 배포하여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편성·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에 적합한 공사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교육 또는 석면안전관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